

특정감사

민간예술단체
보조금 정산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17.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2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예술기금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예술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집행 및 정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범위 및 감사 중점 사항

이번 감사는 2015년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예술단체 중 보조금 규모가 크고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대상 민간예술단체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등을 포함하여 1억원 이상 수혜 받은 57개 단체(145개 사업)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제보된 (보조금 유용 관련) 단체를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보조사업자인 민간예술단체의 교부조건 및 정산 지침에 따른 보조금 집행 여부, 보조금 정산서 및 정산 내역 증빙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3. 감사 기간 및 인원

2017. 7. 3(월)부터 같은 해 8. 18(금)까지 감사인원 2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감사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7. 9. 15.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특정감사 총괄<처분요구사항>

번호	제 목 (지적사항)	처분 요구사항	관계부서
1	극단○○○ 및 □□□의 보조금 유용	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2	▽▽▽의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 증빙	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3	☆☆☆의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 증빙	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4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 처리 업무 미흡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사업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 정

제 목 극단〇〇〇 및 □□□의 보조금 유용
 관 계 부 서 공연지원부, 순회사업부, 문화예술후원센터, 창의예술인력센터
 관 계 기 관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용

극단〇〇〇 및 □□□(동일 대표 〇〇〇, 이하 ‘극단’이라고 한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표 1] 과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지자체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표 1] 극단〇〇〇 및 □□□ 보조금 교부 내역

지원기관	년도	지원사업명	보조금 교부 사업명	보조금 (단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¹⁾	201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제주문화예술재단 ¹⁾	201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공연티켓 1+1 지원사업(1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주민자치센터순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공연티켓 1+1 지원사업(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공연티켓 1+1 지원사업(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농산어촌순회사업				
					합 계	

1)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를 7:3(또는 이상)으로 매칭하여 공연단체 또는 공연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16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서귀포예술의전당으로 보조금 98백만원을 지급한 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위 극단 공연 이후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연출, 출연, 스태프 사례비 등을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각각 지급함

위 극단에서는 각 사업별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

행한 후 작가비, 연출료, 출연료, 조명 음향 등 스탭 사례비, 무대제작비, 홍보물 인쇄비 등을 단원을 비롯한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계좌이체증, 원천세납부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빙영수증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각각 교부 사업별로 정산 확정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에 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 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처리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극단에서는 [별표] “정산내역서 및 입출금계좌내역 대조 자료”와 같이 3년 동안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출연료, 조명·음향·무대 사례비 등을 지급하고 극단 운영진(○○○ 대표, ■■■(연출 및 행정 총괄, ○○○과 ♣♣♣♣), ◆◆◆(기획 및 홍보 담당, ■■■의 ♣♣)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단원A, 단원B, 단원C, 단원D 등 단원들에게 지급한 출연료, 스탭 사례비 일부분을 극단 운영비 명목으로 총 88,376,820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이를 건물 임대료 지급 등 위 극단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다.

* 정산내역서 및 입출금계좌내역 대조 자료는 위 극단의 운영진인 ○○○, ■■■, ◆◆◆ 명의의 통장 2014부터 2016년까지 입출금내역(입금자, 입금일자 등)을 우편으로 받아 보조금 지원사업별 정산내역서(지급처, 지급액, 지

급내역 등)와 대조하여 작성한 자료

또한 공연시 필요한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하면서 디자인 인쇄 업체인 디자인△△△(대표 ▲▲▲)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과다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각 사업별로 결과보고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였고, 보조금 지급액의 일부를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11,149,600원을 디자인△△△ 대표인 ▲▲▲에게서 극단 운영진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이 역시 극단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6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 위 극단에서 ‘공연A’를 공연한 일정 및 장소는 [표 2] 와 같다.

[표 2]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일정 및 장소

횟차	순회대상처 명	장소(지역)	공연프로그램 진행일	공연프로그램 진행시간
1	/	/	2016.6.16	11:00
2			2016.10.6	11:00
3			2016.10.19	14:00
4			2016.10.20	15:00
5			2016.10.21	11:00
6			2016.10.31	19:00
7			2016.12.14	14:00

공연을 위한 무대 운송에 대한 사례비로 ◆◆◆에게 7백만원(원천징수 후 6,769,000원)을 지급하였고 증빙자료로 계좌이체증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 후 정산 확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연을 위한 무대 등은 위 극단 소유의 차로 운송하고 ◆◆◆는 공연 장소인 해당 지역에 한 번도 가지 않는 등 무대운송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빙하는 방법으로 6,769,000원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이와 같이 위 극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제주문화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출연료 등을 위 극단 운영진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8,376,830원, 디자인인쇄업체인 디자인△△△ ▲▲▲대표로부터 과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정산확정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1,149,600원, 무대 운송을 하지 않은 ◆◆◆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허위 증빙하는 방법으로 6,769,000원 등 총 106,295,420원의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이를 연도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표 3], [표 4] 와 같다.

[표 3] 연도별 보조금 유용 금액

연도	보조금 유용 방법	해당 사업 등	금액 (단위:원)
2014	출연료 등 되돌려 받음	201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4,846,500원
		2015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8,349,000원
2015	출연료 등 되돌려 받음	201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1,055,000원
		2015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7,545,200원
		2015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9,302,160원
		2015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264,160원
	디자인△△△ (대표 ▲▲▲)업체에서 되돌려 받음	-	9,539,200
2016	출연료 등 되돌려 받음	2015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2,713,600원
		201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7,478,000원
		2016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6,823,200원
	디자인△△△ (대표 ▲▲▲)업체에서 되돌려 받음	-	1,610,400
	무대 운송 허위 증빙	2016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6,769,000
총 계			106,295,420

[표 4] 사업별 보조금 유용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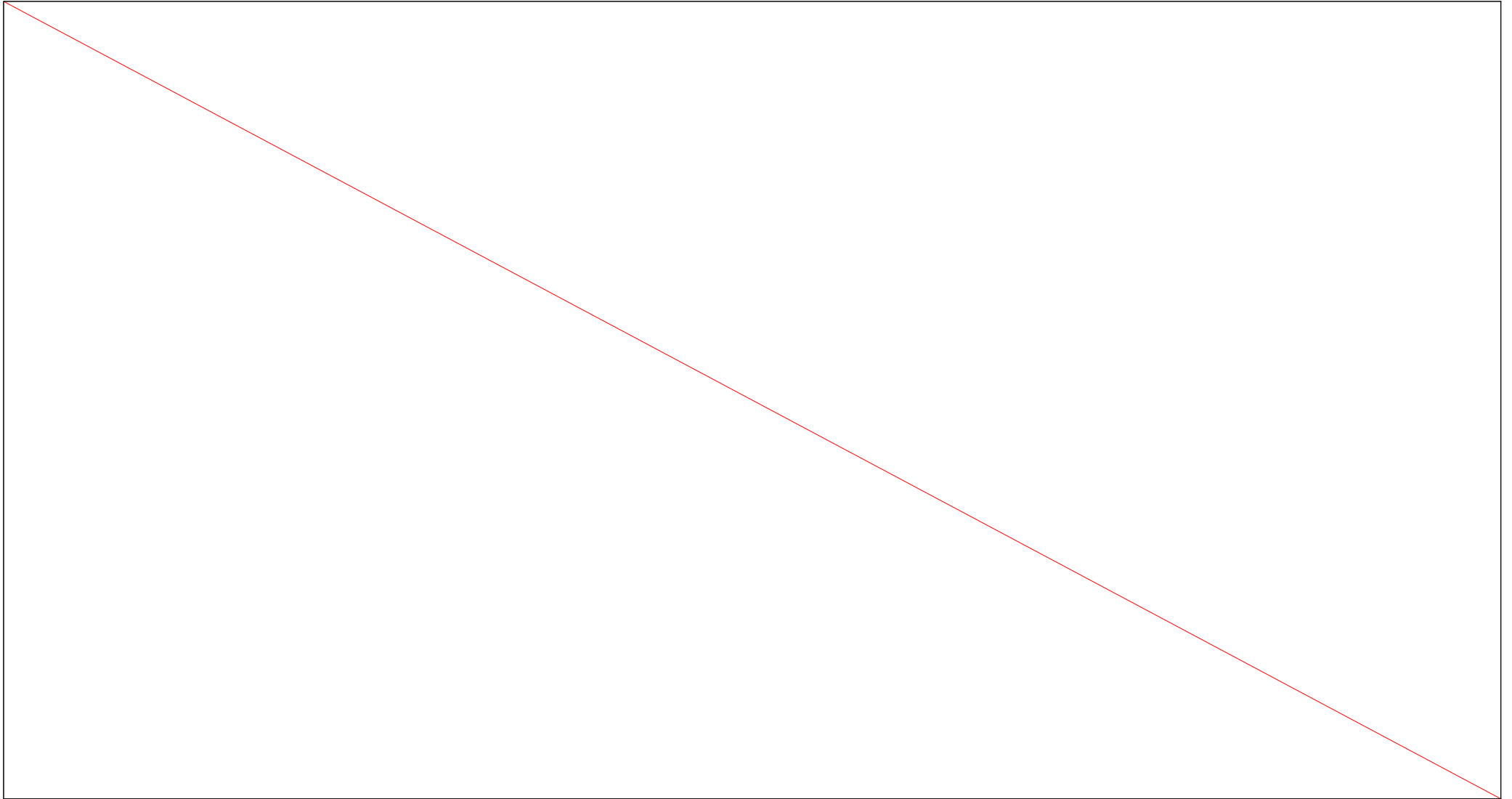
지원기관	보조사업 명	금액 (단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18,607,800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22,894,360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264,160
	업체에서 되돌려 받은 금액(사업별 분리 불가능)	11,149,600
제주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53,379,500
총 계		106,295,420

조치할 사항

[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공연지원부, 순회사업부, 문화예술후원센터, 창의예술인력센터)는 극단○○○ 및 □□□에서 유용한 보조금 106,295,420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정산내역서 및 입출금계좌내역 대조 자료 (개인정보 내역으로 비공개함)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시 정

제 목 ▽▽▽의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 증빙
관 계 부 서 문화예술후원센터
관 계 기 관 서울문화재단
내 용

▽▽▽(대표 ▼▼▼, 이하 ‘극단’이라고 한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15년 공연예술기획및경영인력지원으로 보조금 15,000,000원을,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2015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보조금 11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증빙영수증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서울문화재단에 각각 제출하여 정산 확정하였다.

* 서울문화재단에서 2015년에 지원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를 7:3(또는 이상)으로 매칭하여 공연단체 또는 공연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제4항 제1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최소 10%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성과보고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빙영수증의 종류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극단은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는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으로 각각 달라 위 극단에서 제출한 증빙영수증을 현실적으로 두

기관이 대조 검토할 수 없음을 알고 2015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기획및경영인력지원으로 보조받아 지급한 ◇◇◇의 인건비(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총 4,500,000원)를 공연장상주단체지원의 단체 자부담으로 중복하여 증빙한 결과보고서를 서울문화재단에 제출하였다.

또한 2015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단체 자부담으로 증빙한 ◇◇◇의 인건비(2015년 8월 148,520원)를 공연예술기획및경영인력지원의 자부담으로 중복 증빙한 결과보고서를 각각 서울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정]

문화예술후원센터는 ▽▽▽가 중복 증빙한 보조금 4,648,520원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5조 제4항 제1호,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시 정

제 목	☆☆☆의 보조사업 자부담 중복 증빙
관 계 부 서	문화예술후원센터
관 계 기 관	경기문화재단
내 용	

☆☆☆(대표 ★★★, 이하 ‘극단’이라고 한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15년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 보조금 60,000,000원을,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2015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보조금 9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증빙영수증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경기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였고 정산 확정하였다.

- * 경기문화재단에서 2015년에 지원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를 7:3(또는 이상)으로 매칭하여 공연단체 또는 공연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보조비율) 제4항 제1호,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자부담 최소 10%에 대한 증빙영수증을 결과보고서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빙영수증의 종류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극단은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확정하는 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경기문화재단으로 각각 달라 위 극단에서 제출한 증빙영수증을 현실적으

로 두 기관이 대조 검토할 수 없음을 알고 2015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 보조받아 지급한 ◆◆◆ 등 8명의 사례비 총 14,853,120원([표 1])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단체 자부담으로 중복하여 증빙한 결과보고서를 경기문화재단에 제출하였다.

[표 1 중복증빙내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자부담 증빙 내역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지급일	지급대상	지급액(원)	지급내용	지급내용
2015.12.4		1,856,640		
2015.12.4		1,276,440		
2015.12.4		1,276,440		
2015.12.4		1,856,640		
2015.12.4		1,276,440		
2015.12.4		1,856,640		
2015.11.12		1,856,640		
2015.12.15		3,597,240		
합 계				

조치할 사항

[시정]

문화예술후원센터는 ☆☆☆이 중복 증빙한 보조금 14,853,120원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제5조 제4항 제1호, 201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라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 및 정산 처리 업무 미흡
관 계 부 서 공연지원부, 순회사업부, 문화예술후원센터, 창의예술인력센터

내 용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종료후 30일 이내에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해 사업별로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별로 지정된 정산 증빙자료의 경우,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 지침이 없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으로 1차 보조금을 지급한 후, 각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2차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별로 집행·정산 지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비를 7:3(또는 이상)으로 매칭하여 공연단체 또는 공연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1. 인력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인건비 중복지원

창의예술인력센터에서 담당하는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등 인력지원사업은 민간예술단체의 2명 내외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1년 동안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후원센터가 담당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으로 1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공연예술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의 30%를 보조사업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5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에는 예술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창의예술인력센터에서 담당하는 인력지원사업과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업취지와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동일한 부분이 있다. 또한 교부 및 정산확정 기관이 달라 예술단체가 영수증 등 보조금 증빙자료를 중복 증빙하여 보조금을 유용 편취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력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인력지원사업의 인건비 지급대상자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을 포함한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등에서 보조금 지급받은 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인력지원사업 인건비 대상자에 대한 타 보조사업에서의 지급 내역]

단체명 / 지급대상자	보조사업 지급 내역
/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연출 및 안무료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연출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무대감독

단체명 / 지급대상자	보조사업 지급 내역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출연료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획인력 인건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음향기기 임차비 지급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획인력 인건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출연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출연료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획인력 인건비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진행총괄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스텝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획인력 인건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무대감독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무대오퍼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영상감독, 조감독 사례비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무대감독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스텝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출연료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획인력 인건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스텝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문화전문인력양성및배치사업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스텝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행정운영인력 인건비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스텝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영상감독 사례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행정운영인력 인건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행정운영인력 인건비	
- 공연기획및경영전문인력지원 인건비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출연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출연료	

2. 예술단체 간 거래

공연 시 보조사업자인 연극단체에서는 조명이나 음향기기 임차, 무대 제작 및 설치, 공연 소품 제작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내역서 또는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명·음향기기 임차, 무대 및 소품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에서는 조명·음향기기 임차, 무대나 소모품 제작을 전문 업체가 아닌 친분 있는 극단과의 거래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경우 과거 극단과의 임차 거래가 보조금 유용으로 악용된 적이 있어 「2015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운영 매뉴얼」에 이를 불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조사업자인 단체가 이미 해당 극단과 가계약을 맺었다거나, 임차 기기의 편의성 등을 사유로 이를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극단과의 거래에 대한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견적서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예를 들어 무대 제작 1식 〇〇〇원), 세금계산서 역시 종이 계산서인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극단을 포함하여 예술단체 간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지침이 필요하다. 예술단체 간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보조사업자의 예술단체 간 거래 내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거래 단체	거래액 (단위:원)	거래내역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3,563,700	조명 음향 기기 임차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11,000,000	공연장비 임차
공연장상주단체육성			3,000,000	공연 대소도구 수선 및 제작
공연장상주단체육성			2,000,000	무대 대여 및 제작
공연장상주단체육성			8,700,000	무대 및 소품 제작

3. 예술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거래

「2015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운영 매뉴얼」에는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 불가’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보조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거래를 통해 보조금을 유용·편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일 것이다.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러한 지침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인 예술단체의 대표, 사무국장, 무대감독 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이를 정산 확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표 3] 과 같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의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거래 내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거래 단체	거래액 (단위:원)	거래내역	이해 관계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			5,300,000	공간 임대	
공연장상주단체육성			7,300,000	무대 설치 및 철거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12,800,000	음향 임차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1,960,360	재료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5,300,000	무대제작 등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11,450,000	조명음향 임차	
공연장상주단체육성			12,516,200	무대제작, 소품, 음향조명 임차	
공연장상주단체육성			6,600,000	무대장치제작	

4.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 미흡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점검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보조사업 별 특성을 반영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공연에 대해서 담당부서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경우 단체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점검시 조명, 음향 등 스태프, 출연자 미참석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공연 1회에 대해서 사례비를 반납 받는 조치 외에 별도의 다른 제재 조치는 없으며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등의 사업은 보조금 적정 집행에 대한 점검이 전무한 실정이다.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시 보조사업자인 예술단체가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참석하지 않은 출연자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례비 반환 이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권고]

① 창의예술인력센터와 문화예술후원센터는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공연기획 및경영전문인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등 인력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인건비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연지원부, 순회사업부, 문화예술후원센터는 각 해당 보조사업(공연예술 창작산실육성지원,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공연예술행사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명확한 세부 지침 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현장 점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고 보조금 유용, 편취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